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

◇ 제·개정 이유

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나 복도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 사용이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, 소방서장에게 화재안전성 검토를 거쳐 인정을 받고,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.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35449호, 2025. 4. 15. 개정, 2025. 7. 16. 시행)됨에 따라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이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(제1조, 제2조)
- 나.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자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사전확인 받도록 함(제3조)
- 다.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기 전, 화재안전성에 대해 검토 해야하는 항목과 위탁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기준을 정함(제4조)
- 라. 소방서장의 화재안전성 인정을 위한 검토 기준,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5조, 제6조)
- 마. 화재안전성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

제출서류, 심의기준,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7조)

- 바.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고,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도폭을
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자가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
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현장검사·확인에 관한 사
항을 정함(제8조)